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700
----------	------

2026년 6월 24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출일 : 2026년 5월 26일
다. 회부일 : 2026년 5월 27일
라. 상정일 : 제336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6년 6월 24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가. 제안이유

- 온라인 평생교육 지원 대상을 다자녀 가족의 모든 자녀로 확대하여 다자녀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다자녀가구 지원 대상 제한 규정 삭제 (안 제7조제1항제6호)
- 재혼가정 자녀 순위 산정 관련 단서 삭제 (안 제7조제1항제6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보장기본법」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1) 창의규제담당관(규제심사): 규제 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 제외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있음(미반영).

- (양성평등담당관 의견)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상
‘다자녀 가족’ 기준에 준하여 둘 이상 자녀 양육 가족으로 대상 확대 제안

⇒ (미반영 사유) 타당성 인정되나, 일시에 2자녀 가구 전체로 확대하는
경우 급격한 예산 소요로 인해 사업 안정적 운영 저해 우려 있으므로
재정 여건 및 연차별 성과 기반으로 순차 확대 검토

(5) 규제개선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 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 (2026. 3. 12. ~ 4. 1.) 결과: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 본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안')은 취약계층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온라인 평생교육 교육지원 사업(통칭 '서울런') 대상을 다자녀가족의 모든 자녀(3자녀 이상 가족의 '둘째 자녀 이상' → 3자녀 이상 가족의 모든 자녀)로 확대 및 간소화(재혼 가정 관련 단서 삭제)하고자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였음.

현 행	개 정 안
<p>제7조(교육지원 사업) ①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6세 이상 24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10호 및 제11호의 경우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더라도 지원 대상으로 한다.</p>	<p>제7조(교육지원 사업) ① ----- ----- ----- ----- ----- ----- ----- ----- ----- -----</p>
<p>1. ~ 5. (생략)</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가족의 둘째 자녀 이상의 아동·청소년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의 순위로 정한다. 다만, 재혼가정</u> <u>의 경우 「주민등록법」이나 「가족관계등록법」상 공부로</u></p>	<p>6. <u>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가족의 아동·청소년</u></p>

증명되는 쌍방의 친자를 모두 자녀 수에 포함하되, 현재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순위에 포함한다.

7.·8. (생략)

9.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청소년

10. ~ 12. (생략)

②·③ (생략)

②·③ (생략)

7.·8. (현행과 같음)

9.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10. ~ 1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 조례 제7조는 제5조제1항제2호(취약계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온라인 교육지원 서비스 제공)에 따라 추진하는 온라인 평생교육 교육지원 사업(서울린)의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7조제1항제6호는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가족의 둘째 자녀 이상의 아동·청소년’에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가족의 아동·청소년’으로 개정하고, ‘재혼가정’에 대한 단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가족의 모든 자녀(아동·청소년)가 서울린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여짐.

※ 안 제7조제1항제9호는 한글 어문 규정에 맞게 용어를 정비(띄어쓰기)하여 올바르게 표기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보여짐.

- 안 제7조제1항제6호의 다자녀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는 다자녀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우리 사회의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노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첫째, 조례 제7조는 취약계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온라인 평생교육 교육지원 사업(서울런)의 근거 조항으로,
 - 다양한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별첨1)를 참고하여 다자녀가족이 취약계층(통상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에 해당하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 서울런의 목적(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의 교육격차 해소)과 달리, 다자녀가족 지원은 사회적인 저출산 문제 해결하기 위한 양육부담(교육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지원의 목적과 취지가 서로 상이한바, 교육지원 대상을 각 특성에 맞게 세분하거나, 지원 목적에 따라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여 규정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둘째, 다자녀가족의 모든 자녀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전절차(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이행이 필요한 상황으로, 본 개정안 제출 이후 보건복지부로부터 ‘협의완료 결정’이 통보(사회보장조정과-2199, '26.6.5.) 되어 사전절차는 이행된 것으로 보여짐.

※ 사회보장제도 협의완료에 따른 지원 대상 확대(예정)

1. 3자녀 이상 가족의 ‘둘째 자녀 이상’ → 3자녀 이상 가족의 모든 자녀(중위소득 100% 이하)
2.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3. 국가보훈대상자 손자녀 미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손자녀(중위소득 100% 이하)

- 다만, 사회보장 협의 없이는 지원 대상의 확대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사전 절차가 미이행된 개정안을 제출하여 심각한 정책 혼선을 반복(조례상 지원 대상과 서울런 실제 지원 대상의 불일치 → 정책 신뢰도 저하, 이용자 혼란 초래 등)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평생교육국(교육지원정책과)의 사전절차 이행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음.

※ 현재 조례 제7조제1항 제1호(중위소득 85% 이하)와 제6호(다자녀가족의 둘째 자녀 이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미완료됨에 따라 실제 제1호는 '중위소득 60% 이하'만 지원, 제6호는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또한, 비용추계 결과 다자녀가족 지원 확대로 향후 5년간 약 137억원 이상의 추가 재원이 소요('26년 8억원, '27년 22억원, '28년 29억원, '29년 36억원, '30년 43억원) 될 예정이며, 중위소득 기준 완화(60% 이하 → 80% 이하)에 따른 지원 대상자 확대를 고려할 때, 서울런 사업의 추가 재정부담 규모가 지나치게 과도한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다자녀가족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비용 추계 〉

(단위:천원)

합 계	2026년 (하반기)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13,700,128	773,394	2,154,456	2,872,607	3,590,759	4,308,911

출처 : 본 개정안 비용추계서

〈 서울런 이용자 현황 ('25.5월말 기준) 〉

(단위: 명, %)

구 분	인원(명)	비율(%)	비 고
합 계	40,242	100.0	
제1호 및 제2호	28,722	72.4	중위소득 60% 및 한부모가족 통계 구분 불가 (행안부 비대면 자격 확인 서비스를 통해 자동검증) ※ 조례상 중위소득 기준은 85% 이하이나, <u>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미완료로 60% 이하만 지원 중</u>
제3호	5,394	14.0	
제4호	4,835	12.2	
제5호	109	0.2	
제6호	-	-	※ 지원 불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미완료)
제7호	821	0.9	※ 조례상 국가보훈대상자의 손자녀까지이나, <u>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미완료로 자녀까지만 지원 중</u>
제8호	14	0.0	
제9호	13	0.0	
제10호	127	0.1	
제11호	207	0.2	관외아동 가입현황임 (관내아동은 제1호에 해당되어 구분 불가)

출처 : 평생교육국 제출자료 재작성

- 셋째, 정부의 제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2021년~2025년)은 2자녀 이상을 다자녀로 규정하는 등 지원을 확대·강화하고 있고, 서울시 성별영향평가(양성평등담당관)에서도 ‘둘 이상의 자녀 양육 가족’으로 확대 의견이 있었으며, 서울시 관련 조례(「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도 ‘다자녀가족’을 2자녀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으로 정의하고 지원방안을 규정하고 있으나,
 - 본 개정안은 3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가족만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바, 정부 및 서울시 정책의 일반적인 기준과 서울권의 지원 기준 간 정합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 본 개정안과 관련하여 양성평등담당관에서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상 ‘다자녀 가족’ 기준에 준하여 둘 이상 자녀 양육 가족으로 대상 확대 제안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평생교육국은 미반영(급격한 예산 소요 우려, 순차 확대 검토)함.

- ※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다자녀 가족”이라 함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완료 결정’ 부대의견(사회보장조정과-2199, '26.6.5.)과 같이 서울권은 교육격차 완화라는 목적의 적정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이 공교육 체계 내 개선과 보완이 아닌 민간 교육콘텐츠 제공이라는 점에서 수단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적정성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 서울시와 교육청 간 역할 분담,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연계성, 사업 수행 주체의 적합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보건복지부의 '협의완료 결정'에 따른 부대의견

<p>필수 검토사항</p>	<p>- 現 정부 정책* 방향을 고려할 때, 학교 교과교습을 위한 사설학원 수강료를 공공재원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축소 및 공교육 강화 체감을 위한 노력 필요</p> <p>*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방안(26.4.1.)」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통해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내로 흡수</p>
--------------------	--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5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700
----------	------

제출년월일 : 2026년 5월 26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온라인 평생교육 지원 대상을 다자녀 가족의 모든 자녀로 확대하여 다자녀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다자녀가구 지원 대상 제한 규정 삭제 (안 제7조제1항제6호)
- 나. 재혼가정 자녀 순위 산정 관련 단서 삭제 (안 제7조제1항제6호)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사회보장기본법」
-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 다. 협의사항
 - (1) 창의규제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있음(미반영)

- (양성평등담당관 의견)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상 ‘다자녀 가족’ 기준에 준하여 둘 이상 자녀 양육 가족으로 대상 확대 제안

⇒ (미반영 사유) 타당성 인정되나, 일시에 2자녀 가구 전체로 확대하는 경우 급격한 예산 소요로 인해 사업 안정적 운영 저해 우려 있으므로 재정 여건 및 연차별 성과 기반으로 순차 확대 검토

(5) 규제개선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2026. 3. 12. ~ 4. 1.) 결과: 의견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 평생교육국 교육지원정책과 김미진 (☎ 2133-9279)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로 한다.

6.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가족의 아동·청소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교육지원 사업) ①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6세 이상 24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10호 및 제11호의 경우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더라도 지원 대상으로 한다.</p> <p>1. ~ 5. (생략)</p> <p>6. <u>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가족의 둘째 자녀 이상의 아동·청소년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의 순위로 정한다. 다만, 재혼가정</u> <u>의 경우 「주민등록법」이나 「가족관계등록법」상 공부로 증명되는 쌍방의 친자를 모두 자녀 수에 포함하되, 현재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순위</u>에 포함한다.</p> <p>7.·8. (생략)</p>	<p>제7조(교육지원 사업) ① ----- ----- ----- ----- ----- ----- -----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가족의 아동·청소년</u></p> <p>7.·8. (현행과 같음)</p>

9.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청소년

10. ~ 12. (생략)

②·③ (생략)

②·③ (생략)

9.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10. ~ 1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7조(교육지원 사업) 제1항 제6호를 개정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확대

- 세 자녀 이상 양육하고 있는 다자녀가구 지원 대상을 둘째 자녀 이상 아동·청소년에서 자녀 전체로 확대(제7조제1항제6호)

나. 제7조 제1항 제6호 관련 전제

- 통계청 2024년 인구총조사 결과 중 서울특별시의 ‘미성년자가 있는 자녀수별 가구’ 자료를 활용하여 대상 인원 증가분을 산출(50,381명)
 - ‘자녀 수가 3명 이상 있는 가구’에서 대상 인원이 1명씩 증가하는(둘째 자녀 이상 지원→ 모두 지원) 것이므로, ‘자녀 수가 3명 이상 있는 가구 수’만큼 대상 인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전제
- 증가한 대상 인원에게 제공하는 온라인 콘텐츠, 특화 프로그램, 멘토링, 교재 제공 비용 등 산출하여 적용
 - 대상인원 증가분에 2026~2030년 예상 가입률을 적용하여 연도별 인원 산출
 - ※ 연도별 예상 가입률은 2026년 10%, 2027년 15%, 2028년 20%, 2029년 25%, 2030년 30% 적용
(’21년 신규 가입률 10% 기준(’21.8월~12월), ’25년까지 연평균 가입자 증가율 5%p 증가 전제)
- 비용은 2026년 7월부터 발생하며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추계기간: 5년(2026년~2030년)

라. 방법

- 세 자녀 이상 다자녀 양육 가구 수, 서울런 운영 현황 등을 근거로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 비용 는 13,700,128천원(연평균 2,740,026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지출	지원대상 확대 (안 제7조 제1항 제6호)	773,394	2,154,456	2,872,607	3,590,759	4,308,911	13,700,128
	소계(a)	773,394	2,154,456	2,872,607	3,590,759	4,308,911	13,700,128
수입	-	-	-	-	-	-	-
	소계(b)	-	-	-	-	-	-
□ 총 비용(a-b)		773,394	2,154,456	2,872,607	3,590,759	4,308,911	13,700,128

4. 재원조달 방안: 시 예산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	-	-	-	-	-
시비	지방세수입	773,394	2,154,456	2,872,607	3,590,759	4,308,911	13,700,128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등	-	-	-	-	-	-
민간		-	-	-	-	-	-
기타		-	-	-	-	-	-
합계		773,394	2,154,456	2,872,607	3,590,759	4,308,911	13,700,128

II. 비용추계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교육지원사업) 제1항 제6조 개정에 따라 지원대상 확대 시 비용 발생

2. 세부추계내역

- 1인당 단가: 526,317원*

- 산식: 23,684,282,000원(2026년 서울런 예산) ÷ 45,000명(2026년 목표 인원)
= 526,317원

*2026년 편성 서울런 예산(온라인 콘텐츠, 특화 프로그램, 멘토링, 교재 제공 등)과 목표 인원(45,000명) 적용하여 1인당 소요 예산 산출

- 2026년: 773,394,323원

- 산출방식: 연도별 월평균 가입인원(명) × 1인당 단가(원) × 6/12(개월)
= 2,939명 × 526,317원 × 6/12(개월)
= 773,394,323원

- 2027년: 2,154,455,613원

- 산출방식: 연도별 월평균 가입인원(명) × 1인당 단가(원)
= 4,093명 × 526,317원
= 2,154,455,613원

- 2028년: 2,872,607,484원

- 산출방식: 연도별 월평균 가입인원(명) × 1인당 단가(원)
= 5,458명 × 526,317원
= 2,872,607,484원

- 2029년: 3,590,759,355원

- 산출방식: 연도별 월평균 가입인원(명) × 1인당 단가(원)
= 6,822명 × 526,317원
= 3,590,759,355원

- 2030년: 4,308,911,226원

- 산출방식: 연도별 월평균 가입인원(명) × 1인당 단가(원)

$$= 8,187\text{명} \times 526,317\text{원}$$
$$= 4,308,911,226\text{원}$$

※ 연도별 월평균 가입인원: 대상인원에 연도별 예상 가입률 적용 후 월별 균등 증가 가정하여
해당 연도 평균 인원 산출